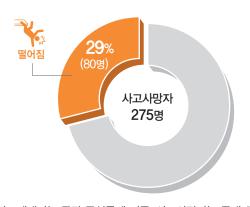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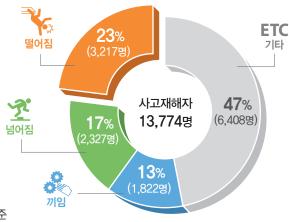
## 조선업 추락재해

# 2대 핵심예방수칙

#### 최근 10년 간(09년~18년) 조선업 사고성 재해통계





※사고재해자는 공단 공식통계 기준, 사고사망자는 중대재해조사 기준

## 営 핵심실천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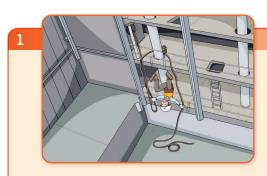






- 작업 전 떨어짐 위험 장소 안전난간 및 개구부 덮개 설치
- 떨어짐 위험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·체결

## 🤸 재해사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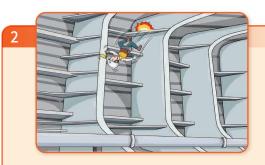


➡ 선박 내부에서 배수펌프 및 호스를 철거하던 중 떨어짐

건조중인 선박 화물창의격벽 통로(Stringer)에서 배수펌프 및 호스 철거 작업 중 안전난간이 없는 통로 끝 개구부로 떨어져 사망 (높이 약 5.2m)







➡ 선박 내부에서 롤러를 이용한 부분 도장 작업 중 떨어짐 \_\_

건조 중인 선박의 원유저장탱크(C.O.TK) 내 측면 철골(Braket) 위에서 롤러를 이용한 부분 도장 중 아래로 떨어져 사망 (높이 약 13m)



➡ 선박 블록 상부 좁은 통로에서 작업 중 떨어짐 \_\_\_

선박 블록 상부 좁은 통로(T-Bar) 위에서 작업발판 설치용 걸이를 설치하던 중 떨어짐 (높이 약 8m)

#### ⚠ 주요 위험요인

-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작업하므로 떨어질 위험
- 안전대를 착용·체결하지 않고. 고소 장소에서 작업하므로 떨어질 위험
- 개구부에 덮개 미설치로 인해 떨어질 위험
- 안전대를 체결하는 부착설비(로프 등)의 설치 불량으로 풀림 또는 부착설비의 인장강도 미달로 인해 부착설비가 끊어져 떨어질 위험

## ♣ 주요 점검항목



#### ○ 안전난간 설치

▶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▶ 개구부에는 반드시 덮개 설치 끝단부에 높이 90cm 이상의 안전 난간 ▶ 공정 진행에 따라 추가 형성되는 설치



#### • 개구부 덮개 설치

- 개구부 확인



#### ○ 안전대 착용·체결

- ▶ 안전난간 설치가 불가능한 고소 장소 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·체결
- ▶ 공정상 안전대를 체결할 곳이 마땅치 않으면, G클램프 등을 이용하여 체결
- ▶ 안전대는 반드시 안전인증 받은 제품 사용

## ☞ 기타 참고사항

-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(안전인증)에 따라 안전난간, 안전대는 인증품 사용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, 제42조, 제43조, 제44조
- KOSHA Guide(C-49-2012) 안전대 사용지침



